

업무협력 협약서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 본 협약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하이브리드부품소재산업을 지식기반의 혁신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 기관간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협력대상분야)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된다.

1.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지원 업무에 대한 협력
2.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풍토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
3. 기술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협력
4. 기타 협력 가능한 공동사업 발굴 및 수행

제 3 조 (비밀유지) 양 기관간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(비용부담) 협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5 조 (협력업무 담당자) 구체적인 협력 방안 수립과 실무 추진을 위한 창구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산업화지원부로 한다.

제 6 조 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7 조 (기간) 본 협약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원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단, 만기일 6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해지의 서면통보가 없는 한, 3년 단위로 그 효력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본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.

2007년 7월 3일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

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

단 장

원 장

권 오 진

고 태 조